-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3. 이 특약의 "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방광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4.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부표2-2 |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방광암 제외)

별첨2 [표 5-1] 참조

(간편)급여암특정통증완화치료특약 (무배당, 갱신형)







약 관 목 차

제1편 일반사항

[특약 약관] 제1편 일반사항 참조

제2편 개별사항

제1관 용어의 정의 등

제2-1조 특약의 보장개시

제2-1조의2 특약의 보험기간 및 갱신

제2-1조의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1조의4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1조의5 "비침습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1조의6 "급여암특정통증완화치료"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5조 사고증명서

제2-6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2-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2-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2-8조의2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경

제2-9조 특약의 소멸

제2-9조의2 "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1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2-11조 해약환급금

제5관 기타사항

제2-12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
- [부표2-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 내암 및 비침습방광암 제외)
- [부표2-3] 급여 신경차단술 분류표
- [부표2-4] 급여 신경파괴술 분류표

(간편)급여암특정통증완화치료특약 (무배당, 갱신형)

-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해당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보장이 가능합니다.
- ※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종목에 따라 특약 명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일반심사형의 경우: "(간편)" 부분이 없습니다.
- ※ "간편심사형"과 "일반심사형" 모두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1편 일반사항

[특약 약관] 제1편 일반사항 제1-1조부터 제1-13조까지를 이 특약 "제1편 일반사항" 으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편 일반사항"의 위치는 목차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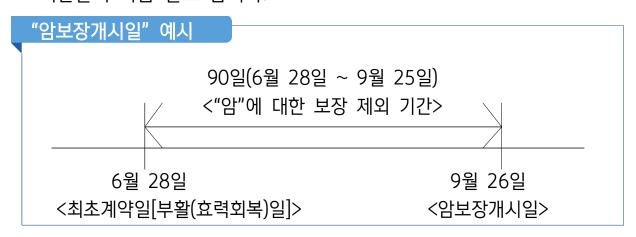
제2편 개별사항

제1관 용어의 정의 등

제2-1조 특약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의3("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의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최초 계약의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최 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제2-1조의2 특약의 보험기간 및 갱신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년만기 갱신으로 하며,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갱신된 경우 이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전 계약"이라합니다)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다만, 갱신일부터 제3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가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② 제1-9조(특약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1-1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③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다만, 주계약 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하며, 주계약이 갱신형 보험 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 이하 같습니다) 만료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10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갱신된 특약에 대해서는 갱신 전 특약의 약관을 준용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제3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

기간 만료일과 같은 경우

- 2. 제2-9조(특약의 소멸)에 따라 이 특약이 소멸된 경우
- 3. 주계약이 갱신형 보험인 경우 계약자가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주계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한 경우
- ⑥ 갱신계약의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은 갱신 시점의 나이 및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는 갱신계약의 변경내용 및 보험료 등을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관련 내용을 서면, 전화(음성 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 ⑧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 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해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산출기초율 :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이율 및 위험률 등

제2-1조의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부표2-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 장점막내암 및 비침습방광암 제외)"에 해당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 1. 분류코드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 2. 분류코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 3. 제2-1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 내암

- 4. 제2-1조의5("비침습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비침습방 광암
- 5.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중 분류코드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 중 분류코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 다.
-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 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다만,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암

악성신생물(암)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방광암을 제외한 암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을 기준으로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여부 및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워밬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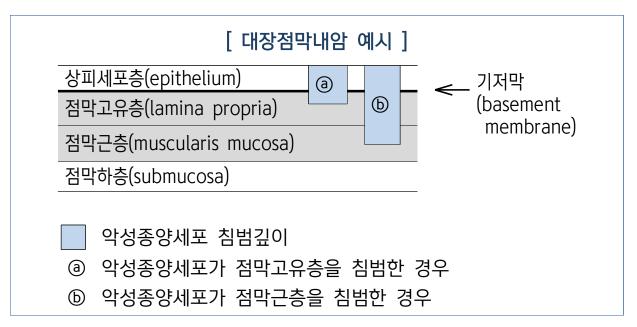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 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진단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으로 진단확 정된 것으로 봅니다.
- ·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 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으로 진단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1조의4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의 악성신생물(암)(C18 ~ 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 ②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읍 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1조의5 "비침습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비침습방광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방광의 악성신생물(암)(C67)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방광 의 이행상피세포층(transitional 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 포가 점막 고유층(lamina propri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비침습유두암 (papillary carcinoma) 상태로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 [AJCC(Ame 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Cancer Staging Manual] 제 8판"에서 정한 병기상 TaNOMO인 방광암을 말합니다.

[비침습방광암 예시]	
이행상피세포층(transitional epithelium) @	그 점막층
고유층(lamina propria)	
점막하층(submucosa)	
근육층(muscle)	
악성종양세포 침범깊이	
● 악성종양세포가 점막 이행상피세포층을 침범한 경	J우

- ② 제1항의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이 향후 개정되는 경우에는 "비침습방 광암"의 진단확정 시점에 적용되는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을 따릅니 다.
- ③ "비침습방광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읍 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며, 이 경우 "비침습방광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비침습방광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 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3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1조의6 "급여암특정통증완화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암특정통증완화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방광암"의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아래 중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1. "급여 신경차단술"을 받은 경우
 - 가.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신경차단술"이라 함은 <부표2-3> "급여 신경차단술 분류표"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이하 "급여 신경차단술 인정기준"이 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나. '가'호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신경차단술 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관련법령에 따른 "급여 신경차단술 인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급여 신경차단술 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급여 신경차단술 인정기준" 을 따릅니다.
 - 다. '가'호 및 '나'호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신경 차단술 분류표"(<부표2-3> 참조)에서 정한 진료행위 외에 "급여 신 경차단술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급여 신경파괴술"을 받은 경우
 - 가.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신경파괴술"이라 함은 <부표2-4> "급여 신경파괴술 분류표"에 해당 하는 진료행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 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이하 "급여 신경파괴술 인정기 준"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나. '가'호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신경파괴술 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관련법령에 따른 "급여 신경파괴술 인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급여 신경파괴술 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

- 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급여 신경파괴술 인정기 준" 을 따릅니다.
- 다. '가'호 및 '나'호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신경 파괴술 분류표"(<부표2-4> 참조)에서 정한 진료행위 외에 "급여 신 경파괴술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3.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연간 30일이상 처방"받은 경우
 - 가.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마약성 진통제"라 함은 처방 당시 식품의 약품안전처 예규「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급여 마약성 진통제 약효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급여 마약성 진통제 약효분류번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고시하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서 정한 마약성 진통제 분류 기준을 따릅니다.

급여 마약성 진통제 약효분류번호

800, 810, 811, 812, 820, 821, 829, 890

- 나. '가'호의 "급여 마약성 진통제 약효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쳐 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에만 급여 마약성 진통제로 인정합니다.(이하 "급여 마약성 진통제 인정기준"이라합니다.)
- 다. "연간 30일이상 처방"이라 함은 "급여 마약성 진통제"의 "연간" 처방일수(주사 등 내복 외의 방법으로 동일한 날 2회 이상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각 처방일수 1일로 합산합니다.)를 합산하여 30일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특약에 있어서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처방일수 합산시 기준일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날로 합니다.
- 라. '가'호 및 '다'호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마약성 진통제 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관련법령에 따른 "급여 마약성 진통제 인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급여 마약성 진통제 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

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급여 마약성 진통제 인정기준" 을 따릅니다.

마. '가'호 부터 '라'호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마약성 진통제"에 해당하는 약제 외에 "급여 마약성 진통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약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제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특약보험 기간 중 그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의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급여금"(<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제2-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특약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가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에 의해 납입면제가 된 경우 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를 따르며, 이 특약이 해당약과 「보험료납입면제대상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가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이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간편심사형"에 한하여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삭감하여 지급합니다.